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호(연세대학교)·김용호(연세대학교)

북한의 범죄 실상을 북한의 공식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현재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재산 범죄가 발생하고, 재산 범죄의 이차적인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부정부패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 양상 비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 사회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주제어: 북한, 북한 사회, 범죄, 유형, 인권

1. 서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유형과 통계를 공개하며, 굳이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더라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과 양상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북한 당국은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사회주의체제’라는 이유로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¹⁾ 북한의 언론 역시, 범죄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아 현재까지의 해당 분야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같은 간접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²⁾하였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범죄 실태가 조금씩 알려지기는 했지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북한 범죄 연구는 자료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해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초기 북한 범죄 연구는 1980년대 후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서명이 이뤄진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한 사회상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최인섭³⁾은 “북한

1) 김운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2007), 제7권 제3호, 72쪽.

2) 1998년까지 947명이던 북한이탈주민이 2001년부터 연간 1,000명이 넘게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2,000여 명이 넘게 입국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총 2만 4,934명이 입국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66>(검색일: 2013.05.15)

3) 최인섭, “북한의 一般犯罪에 관한 豫備的 考察,”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1호 (1992).

의 一般犯罪에 대한 豫備的 考察”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북한 범죄를 연구했고, 서용석⁴⁾은 “북한 사회의 범죄”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범죄 환경의 일반적인 원인을 연구했다. 본격적인 연구는 2005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김윤영⁵⁾은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에서 북한의 범죄를 일반 범죄와 정치적 범죄로 구분하고, 범죄와 연결된 형벌의 본질과 유형을 연구하였다. 그는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이란 또 다른 연구⁶⁾에서 기존 연구에 언론 등에 공개된 사례를 보강하였다. 그 외 이학립⁷⁾은 “북한의 범죄형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통제이론과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북한의 범죄 현상을 연구했지만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북한 당국이 범죄의 발생과 그로 인한 사회 불안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범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실재한 사건·사정들과 있을 수 있는 정황들에 기초하여 『법투쟁 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라는 내부 비밀 지침을 만들어 전국 인민 보안성서(우리의 경찰서)에 하달하여 시행하였다.⁸⁾ 보고서 형태의 이 서적은 북한에서 실제 발생한 범죄 사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되어 있는 범

4) 서용석, “북한 사회의 범죄,” 『아세아연구』, 제35권 1호(1992).

5)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6)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제3권 1호(2009).

7) 이학립, “북한의 범죄형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통제이론과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2012).

8) 『국민일보』, 2011년 6월 19일.

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범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북한 범죄에 대한 남한 학자들의 관심도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 사회상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다만, 『참고서』에 수록된 사례가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보다는 특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사례의 과도한 일반화’라는 우려가 있지만 북한 범죄에 대한 ‘자료의 희소성’, ‘접근의 제한성’이란 관점에서 실제 북한에서 발생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2. 범죄 유형의 분류

남한 ‘형법’에는 범죄 개념을 내용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지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를 형식적인 범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⁹⁾인 반면, 북한에서는 북한 ‘형법’ 제10조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¹⁰⁾라고 규정

9) 임웅, 『형법총론』(파주: 법문사, 2010), 69~72쪽.

10)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1권(서울: 국가정보원, 2012), 356쪽.

<표 1> 기존 학자들의 북한 범죄 분류 방식

| 최인섭의 분류 ¹¹⁾ | 김윤영의 분류 ¹²⁾ |
|--|--|
| (1) 반혁명 범죄 (2) 일반 범죄 ①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②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③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④ 사회주의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⑤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 (1) 정치 범죄 ① 쿠데타사건 ② 반김정일 배라와 구호사건 ③ 반체제활동 (2) 일반 범죄 ① 경제 범죄 ② 대인 범죄 ③ 사회주의 문화침해 범죄 ④ 권력형 범죄 |

함으로써 북한에서 범죄적 행위를 하더라도 사회주의 제도에 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한과 차이가 있다.

남북한 간 형법체계¹³⁾ 역시 범죄 개념의 차이만큼 상이한데, 남한 ‘형법’은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에 따라 범죄를 규정¹⁴⁾하고 있지만, 북한 ‘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로 구분하고 있어 남북한 간 범죄 유형의 비교·분석이 어렵다.

11) 최인섭, “북한의 一般犯罪에 관한 豫備의 考察,” 265~266쪽.
 12)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77~84쪽.
 13) 현행 북한 ‘형법’은 2009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6호로 개정되어 총 9개장 30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23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제1장 형법의 기본, 제2장 일반 규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6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9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권, 354~412쪽.
 14)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2010), 5쪽.

<표 2> 남한 ‘형법’의 범죄 3분설에 따른 북한의 범죄 유형 분류 시도

| 범죄 유형 대분류 | 범죄 유형 소분류 |
|--------------|---|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①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② 자유에 대한 범죄 ③ 재산 범죄 |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②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③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④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③ 도주, 범인은닉 및 무고의 죄 ④ 우리의 특별법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 ⑤ 북한에서만 처벌되는 대표적인 범죄 |

따라서 남북한 간 범죄의 비교분석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현재까지 북한의 형법체계에 따라 분류한 최인섭의 시도와 독자적인 분류 방법을 택한 김운영의 시도가 눈에 띈다.

기존의 분류 방법은 북한의 특이한 형법체계에 따른 것으로, 남한 형법학자들이 북한의 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의 범죄 양상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범죄를 남한 형법학자들이 분류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남한 형법학계는 침해되는 보호 법익에 따라 2분설과 3분설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2분설은 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와 ② 보편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3분설은 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②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③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해석에 있어서는 3분설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¹⁵⁾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범죄 유형을 <표 2>와 같이, 남한 형법학자

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죄 3분류 방식으로 북한의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한 형법학자들이 북한의 범죄 유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국가·협동농장 소유재산에 대한 범죄는 국가적 법익 침해로 분류되지만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3.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

1)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개관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현재는 인민보안부)에서 북한 형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실제 범죄 사례를 소개하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참고서)』라는 책을 발간한 것은 2009년이다. 표면적으로는 인민보안기관에 근무하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의 법 지식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¹⁶⁾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개념이 자리 잡게 되면서 체제 위협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교육지책으로 나온 해결책이라는 측면¹⁷⁾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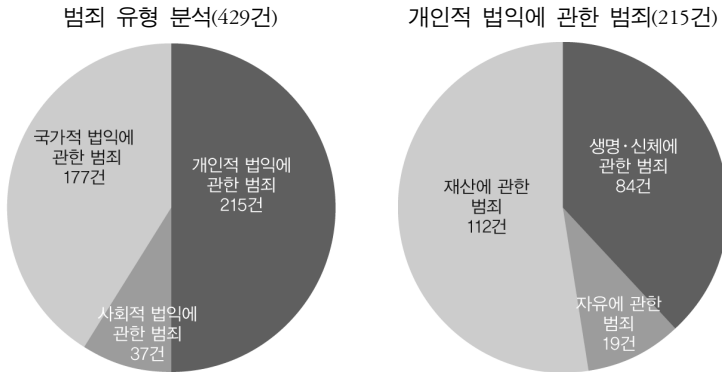
이 서적은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두 번째 단원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모

15) 이재상, 『형법각론』, 5쪽.

16) 리윤기 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평양: 인민보안성, 2009), 1쪽.

17) 『국민일보』, 2011년 6월 19일자.

<그림 1>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유형 분석



범 사례가 담겨 있고 세 번째 단원에 이르러서야 법의 해석적용에 제기 되는 정황과 해답을 게재함과 아울러 형사·민사 등 모두 454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 중 25건의 사례는 입수 과정에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429건의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 개인적 범익에 관한 범죄는 215건,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가 84건, 자유에 관한 범죄가 19건, 재산에 관한 범죄가 112건이며, 사회적 범익에 관한 범죄는 37건이 게재되어 있다. 나머지 177건이 국가적 범익에 관한 범죄였는데, 국가적 범익에 관한 범죄가 많은 것은 국가의 통제가 강한 사회주의체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특이한 점은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대외에 공개될 우려가 있어 반국가 범죄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반국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인민보안성이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가 참고서에서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 분석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다시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와 자유에 관한 범죄, 그리고 재산에 대한 범죄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분류되는데 입법 유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기죄는 대체로 처벌되고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살인행위’와 관련해서는 북한 형법에는 살해의 의사(고의)의 정도에 따라 ‘고의적 중살인죄’, ‘고의적 경살인죄’,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 초과살인죄’로 구분하여 명문화되어 있다. 참고서에는 30건의 살인 범죄가 소개되어 있는데, 살인의 동기와 목적을 분석해보면, 치정(癡情)이나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8건이고, 절도·강도·빛 탕감 등의 재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7건이며, 보복살인적 성격의 사건이 4건이고, 질병 등으로 시달리는 가족에 대한 안락사적 성격의 사건이 3건이며, 자살방조가 2건 등이다(<표 3> 참조).

불륜녀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연탄가스로서 질식사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상점이나 가정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

<표 3>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살인 범죄의 동기와 목적별 구분

| 계 | 치정·불륜 | 재산 범죄 | 보복성 | 안락사 | 자살방조 | 간간 살인 | 정신이상 | 기타 |
|----|-------|-------|-----|-----|------|-------|------|----|
| 30 | 8 | 7 | 4 | 3 | 2 | 1 | 1 | 4 |

다 발각되어 경비원이나 집주인을 살해한 경우, 빗 독촉에 못 이겨 채권자를 청산거리로 살해한 사건, 자신의 불성실 업무 태도를 보고한 상사를 집에 찾아가 망치로 살해한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보고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형법상 인간의 시신이나 일부를 취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장합숙소 경비원을 도끼로 살해한 후 시신을 양고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건과 아들의 정신병을 고친다는 소문들 믿고 뇌수를 구해달라고 청탁한 사건 등이 보고되어 있다.¹⁸⁾

‘상해와 폭행행위’와 관련해서는 18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남한 사회에 비해 범죄행위 수법이 잔인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의 친구에게 면도칼로 특정 부분에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절도한 사실을 보안대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실명이 될 정도로 구타하는 사건도 보고됐고, 권투시합 도중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게 급소부위를 고의로 발로 차서 성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¹⁹⁾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는 30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그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11건, 직무태만으로 인한 사건이 5건, 의료사고 4건, 안전사고 3건, 부주의 2건, 기타 2건이다. 차량보유대수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조차, 기업소 화물자동차나 버스운전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부주의로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해 사망하게 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의료지식이 낮아 전혀 근거 없는 치료행위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8)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99, 138, 339, 407, 438쪽.

19) 위의 책, 419, 455, 457~458쪽.

<표 4>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과실치사상 범죄의 원인별 구분

| 계 | 교통사고 | 직무유기 | 의료사고 | 안전사고 | 부주의 | 기 타 |
|----|------|------|------|------|-----|-----|
| 30 | 11 | 5 | 4 | 4 | 3 | 3 |

도 있다(<표 4> 참조).²⁰⁾

‘유기행위’에 대한 일반 규정은 없고, ‘늙은이, 어린이 보호책임회 피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6건의 사례가 영아 및 어린이를 유기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며, ‘학대죄’는 ‘학대괄시죄’라는 규정이 있는데, 군대 소대장이 소대원에 대해 욕설과 구박을 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학대행위 사례²¹⁾가 있다. ‘유기와 학대죄’의 사례는 남한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② 자유에 관한 범죄

남한 사회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다. 북한에서는 협박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강요죄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범죄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며 약취와 유인죄는 ‘유괴죄’라는 일반 규정 이외에 어린이에 대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강요’와 ‘체포와 감금행위’의 사례는 남한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약취와 유인행위’와 관련된 사례는 남한의 1960~1970년대의 범죄 양상을 보였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다른 道의 3살 아이를 훔쳐다 키우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처가 임신하자 훔쳐 온 아이를 영양실조로 죽게 한 범인에게 ‘어린이 훔친죄’와 ‘학대괄시죄’

20) 위의 책, 77, 334~335쪽.

21) 위의 책, 427쪽.

를 적용하였다. 한편 역전공원 주변에서 매음 행위를 하는 여인을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이웃나라 사람에게 3,500엔을 받고 팔아넘긴 자를 ‘유괴죄’로 처벌하였다. ‘성폭력’ 사례의 경우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북한 형법에는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북한 ‘형법’ 제258조에 규정된 ‘불량자적 행위죄’로 처벌하고 있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남한과 입법 형식은 유사하나 노동 현장에서 감독관을 뇌물수수 등으로 무고한 사례들이 다발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다.²²⁾

③ 재산에 관한 범죄

북한의 재산 범죄는 대부분 국가·협동농장 소유에 대한 침해와 개인 소유에 대한 침해를 구분하여 이중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재산에 관한 범죄 부분에서 다룬다. ‘절도행위’는 재산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북한 ‘형법’에는 ‘국가 또는 개인재산 훔친 죄’와 별도로 ‘국가 또는 개인재산 빼앗은 죄’로 구분하였는데, ‘국가 또는 개인재산 빼앗은 죄’는 일반적인 형태가 공공연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 등을 가지고 뛰거나 빼앗아 가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남한의 경우, 날치기 범죄가 해당되기도 하고, 일부의 경우는 강도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²³⁾

재산에 관한 범죄를 분석해보면 북한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집착과 개념이 상당히 발전돼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들이 발견된다. 49건의 절도 범죄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데, 이를 소유권의 주체, 절도의

22) 위의 책, 391, 463~467, 473쪽.

23)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359~360쪽.

<표 5>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절도 범죄의 동기별 구분

| 계 | 가사·경제보탬 (돈벌이 목적) | 도박·상습 절도 등 | 식량 조달 | 유혹·오락 | 작업장·기관 운영 자금마련 | 기타 |
|----|---------------------|---------------|-------|-------|-------------------|----|
| 49 | 24 | 5 | 3 | 2 | 1 | 14 |

<표 6>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절도 범죄의 범죄자 직업별 구분

| 계 | 노동자 | 무직자 | 군인 | 미성년자 | 기간원 | 범죄단체 | 기타 |
|----|-----|-----|----|------|-----|------|----|
| 49 | 21 | 9 | 2 | 2 | 1 | 1 | 13 |

동기, 행위자의 직업, 피해물품의 종류, 피해 규모를 분석해본다. 먼저 소유권의 주체를 분석하면, 국가 등의 소유가 32건인데 반해 개인소유가 17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절도의 동기별로 구분해보면, 가정경제에 보탬을 위한 목적이 24건, 도박이 있거나 상습성으로 인해 절도를 저지른 경우가 5건, 음식 등 식량을 얻을 목적이 3건, 유혹이나 오락에 사용할 금전을 마련할 목적이 2건, 자신이 소속된 작업장이나 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이 1건이다. 특히 가사경제에 보탬을 위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상점의 부속품이나 물건을 절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도적패를 결성하는 등 절도 등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표 5> 참조).

범죄자를 직업별로 분석하면, 판매원·경비원·농장원 등 노동자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무직자·방랑자가 9건, 군인이 2건, 미성년자가 2건, 기간원이 1건 등이다. 군부대 노동자가 부대 내 건조장에 넣어놓은 습기 찬 모포를 수차례에 걸쳐 훔쳐, 중고품 장사를 하는 여성들에

<표 7>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절도 범죄의 피해물품별 구분

| 계 | 자동차·기계 (부속품 포함) | 역사 유물 | 시장·상점 공장 물품 | 가전제품 등 | 식량 | 의류·모포 |
|-------|--------------------|---------------|----------------|--------|----|-------|
| 49 | 8 | 6 | 6 | 4 | 4 | 3 |
| 여행자 짐 | 가축·인삼 생물 | 케이블선 등 금속류 | 현금 | 구호물자 | 그물 | 기 타 |
| 3 | 3 | 3 | 2 | 1 | 1 | 5 |

계 판매한 사건으로 북한의 장마당에서 군수품들이 사고 팔리는 것 중 군부대에서 절취된 물건들이 상당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표 6> 참조).²⁴⁾

한편 절도 범죄를 피해물품별로 분석해보면 각종 물자의 중앙배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사실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기계·자동차·자전거와 그 부품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시장·상점·공장의 물품이 6건, 역사유물이 6건 등이다. 농기계작업소 화물차운전수가 장거리은행 과정에 차가 고장 나자 주변의 차사업소 차고에 침입하여 타이어를 비롯한 차 부속품을 훔쳐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맞추고 달아난 사건²⁵⁾에서 보듯이 각종 물자의 중앙배급이 어려운 실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고가의 역사유적품에 대한 절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역사유적을 얻기 위해 절간, 서원, 박물관은 물론, 묘를 파헤치는 경우 등도 발생하였다.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물품에 대한 절취사건도 보고됐다(<표 7> 참조).

절도 범죄의 피해물품의 규모(가액)별로 살펴보면, 북한돈 20만 원

24)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129쪽.

25) 위의 책, 229쪽.

<표 8>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절도 범죄의 피해품 가액별 구분

| 계 | 20만 원 미만(소액) | 2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다액) | 미상 |
|--------------|---------------|--------------------|---------------|--------------|
| 49 (100%) | 27 (55.1%) | 7 (14.3%) | 10 (20.4%) | 5 (10.2%) |

미만이 27건, 2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7건, 100만 원 이상이 10건, 금액을 전혀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5건이다(<표 8> 참조).²⁶⁾

‘강도행위’에 대한 사례는 12건으로 처음부터 강도를 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 등을 빼앗은 경우가 7건이 있으며, 절도를 계획했다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강도로 돌변한 남한 ‘형법’의 ‘준강도죄’ 성격의 경우가 5건이 있었다. 특히, 군인으로 가장하여 강도행위를 저지른 사건도 2건이 있었다.

‘횡령행위’에 대해 북한에서는 ‘국가 또는 개인재산 횡령죄’ 이외에 남한의 ‘형법’에 없는 ‘국가재산공동탐오죄’²⁷⁾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신발공장 지배인이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준다며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을 시장에 내다 팔아 50만 원을 받은 뒤, 10만 원은

26) 절도 피해품의 가액으로 볼 때 남한과 큰 차이가 없는데, 남한도 2011년도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전체 28만 1,362건 중 19만 3,472건으로 약 68.8%를 차지하고,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가 5만 18건으로 약 17.7%이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6,602건으로 2.3%,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3만 1,270건으로 11.2%이다. 경찰청, 『2011 범죄통계』(서울: 경찰청, 2012), 294쪽.

27) 합법적 또는 사업보장의 명목하에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나누어 먹거나 공동으로 탕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재산 범죄와는 달리 개인이기주의적 성격이 약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한 법조문으로 상급기관에 거짓 보고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나 상금을 부풀리는 행위 또는 각종 총화, 체육경기, 서클, 기념 모임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공동으로 탕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250쪽.

<표 9>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사기 범죄의 사기행위 방법

| 계 | TV 판·구매 대행 | 화폐 위·변조 | 모조 골동품 이용 | 저울추 조작 |
|-----------|------------|----------|-----------|----------|
| 15 | 3 | 3 | 2 | 2 |
| 군인·영예군인가장 | | 고리 이자 제공 | 간통 행위 이용 | 물건 속여 팔기 |
| | 2 | 1 | 1 | 1 |

<표 10>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사기 범죄의 피해물품별 구분

| 계 | 금전 | 시장 물건 | 쌀 |
|----|----|-------|---|
| 15 | 10 | 3 | 2 |

생산총화시 상금으로 주고, 40만 원은 체육경기 비용으로 지출한 것²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15건의 사례가 있는데, 재물을 편취하는 방법을 분석을 해보면, TV 등 물건을 싸게 팔아준다고 속여 금전을 받은 경우가 3건, 화폐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방식이 3건, 모조 골동품을 진품으로 속인 경우가 2건, 저울추를 조작하여 물건 값을 더 받은 경우가 2건, 군인·영예군인으로 속인 경우가 2건 등이다.

사기 방법은 상당히 후진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신형 TV 판매를 가장하거나, 저울추를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 대표적이며, 위·변조 2건의 사례는 1,000원권 화폐의 ‘1’자를 ‘5’자로 고쳐 행사하거나, 수입모조지에 수채화구로 1,000원권 화폐를 그린 경우²⁹⁾이다.

또한, 피해물품별로 분석해보면, 금전이 가장 많은 10건, 시장 물건

28)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182쪽.

29) 위의 책, 174~175쪽.

이 3건, 쌀이 2건이다(<표 9>, <표 10> 참조).

‘손괴행위’에 대해서는 7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북한의 연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보장자가 허리가 아프다며, 산에 땀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마을주변에 심은 나무나 가로수를 베어 땀감으로 사용한 것을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³⁰⁾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한 죄

북한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는 ‘불량자적 행위죄’로 처벌되며, ‘패싸움죄’, ‘집단적 소동죄’ 및 자격을 사칭한 범죄로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등을 입법화하고 있다. 인민보안원(경찰)이 시장상인들을 단속하자 20여 명이 단속에 항의하여 북한의 공식기관의 건물에 진입하여 책상 등 기물을 부수는 사건³¹⁾이 있다. 북한에서는 방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고, 그로 인한 결과책임을 묻고 있는데, 방화로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로만 처벌할 뿐이다. 다만, ‘과실산불죄’와 ‘화재방지규정위반죄’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② 공공의 신용 및 건강에 대한 죄

‘화폐 또는 유가증권 위·변조행위’에 관한 사례로 기차표·휘발유표를 위조한 경우가 있다. 문서위조도 4건이나 소개되어 있는데, 무직자가 평양시민증을 훔쳐 평양시에 허가 없이 출입하여 사기행각을 벌이

30) 위의 책, 168쪽.

31) 위의 책, 347쪽.

거나 무직자가 인민보안원의 신분증명서를 훔쳐 뒷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물건을 빼앗은 경우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죄가 많았다.³²⁾ 북한 ‘형법’에는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마약밀수, 밀매죄’를 두어 처벌하고 있는데, 참고서에는 3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마약제조 및 밀매에 관한 사례 2건 모두 약학대학 교원이라든지 약학 부분 종사자에 의해 마약이 제조·유통되었다고 기재돼 있다.

③ 사회풍속과 도덕에 관한 죄

‘성풍속’과 관련된 행위는 ‘불량자적 행위죄’나 ‘비법혼인죄’를 적용³³⁾하고 있으며 ‘묘포손죄’, ‘미신행위죄’, ‘미신행위조장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주궁합을 봐주고 궁합이 맞지 않다고 하여 파혼시키는 결과를 낳은 경우 미신행위죄로 처벌한 것과 상대방이 망하게 해 달라며, 점쟁이에게 그 방법을 듣고, 상대방의 집에 소금을 뿌리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³⁴⁾도 있었다.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북한 ‘형법’에는 일반 규정인 ‘직무태만죄’ 이외에 많은 세부 직무유기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전력생산·공급질서 위반죄’, ‘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32) 위의 책, 353, 355쪽.

33)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341쪽.

34)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416~417쪽.

〈표 11〉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기술된
뇌물 범죄의 수뢰물품별 구분

| 계 | 금전 | 전자제품 | 성접대 | 미상 |
|----|----|------|-----|----|
| 15 | 11 | 1 | 1 | 2 |

한 죄’,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산림조성·보호·리용질서위반죄’,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신소·청원묵살죄’ 등이 있다. 구역연료사업소 지배인이 주민공급용 석유를 적게 공급하여 주민들이 8개월간 연료공급을 받지 못하여 ‘전력생산·공급질서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³⁵⁾도 있다.

‘직권남용 행위’ 역시, ‘직무람용죄’, ‘월권행위죄’, ‘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와 ‘국가기관권위훼손죄’, ‘비법체포·구속·수색죄’, ‘사건과장·날조죄’, ‘비법석방죄’, ‘부당판결·판정죄’, ‘판결·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는 물론, 북한 ‘형법’으로 많은 형태의 직권남용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참고서에는 관련 사례가 29건이 소개되어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와 관련해서는 남한 ‘형법’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지만, 북한 ‘형법’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하지 않고, 일반인도 국가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고의적 비밀누설죄’와 ‘과실적 비밀누설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국방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국방비밀누설죄’를 두고 있다. ‘뇌물죄’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관리일군뇌물죄’ 이외에, 일반인도 뇌물을 받는 경우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15건의 뇌물죄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관리일군뇌물죄’는

35) 위의 책, 265쪽.

11건이고, ‘일반뇌물죄’는 4건이다. 이 중 6건은 뇌물을 받고 직권남용까지 한 사례이다. 수뢰한 물품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전이 11건, 전자제품 1건, 성접대 1건, 뇌물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2건으로 금전이 가장 많았으며, 금전 중 달러로 뇌물을 받은 경우가 11건 중 5건을 차지하였다(<표 11> 참조).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는 ‘직무집행방해죄’와 ‘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3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살림집을 짓는데 건설감독원이 규정대로 지을 것을 요구하자, 건설감독원을 폭행한다든지, 순찰보안원의 시장 뒷골목 단속을 보고, 제3자들인 3명이 함께 순찰보안원을 폭행하여 단속을 방해한다든지, 공장의 문제점을 검열하러 온 검열관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전화하여 검열을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다든지의 사례³⁶⁾를 보면, 사회 전반의 걸쳐 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법의식이 결여된 것은 ‘봉인무효 행위’에서도 나타나는데, 벽돌공장노동자가 자기 아들이 개인재산 훔친죄로 예심을 받는 동안 예심원이 집에 찾아와 2명의 입회인을 세우고 재산담보 처분한 다음 “재산을 처분하면 행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후 해당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갔지만, “내 것을 내가 처리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고 하면서 모두 소비해 버려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³⁷⁾

36) 위의 책, 349~351쪽.

37) 위의 책, 378쪽.

③ 도주와 무고 행위 등

도주와 무고 행위는 남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남한은 특별법으로 규정된 많은 규범들을 북한에서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행위, 조세·관세 및 이자제한위반 행위, 특허·상표·실용신안위반 행위, 불법건축행위, 농업·수산·산림·환경 위반 행위 등이 그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행위 위반의 경우인데, 의료시설과 의학지식이 매우 열악한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어느 병원의 임상연구실장이 O항원 바이러스(virus) 소거제를 제조하면서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잘못된 공정으로 의약품을 생산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간염발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게 한 사례와 제약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페니실린(penicillin)과 마이신(mycin) 분말을 사다가 다른 물질과 섞어 주사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 등이 그러하다. 농장원이 자신의 아들의 살해 행위를 인민보안소 담당 보안원이 확인할 때, 알려주지 않아 ‘일반범죄불신고죄’로 처벌되거나, 협동농장위원회 부원이 감사농사 지도를 잘못하여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는 죄’로 처벌된 사례 등이 북한에서만 처벌되는 경우이다.³⁸⁾

4. 결론: 범죄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사회상에 대한 추론

북한의 범죄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북한 사회상의 단면은 우선 생명과 신체의 경시 풍조이다. 장성택에 대한 처벌과 처형 방식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38) 위의 책, 241, 341, 373쪽.

생명과 신체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 수준에서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매우 적다는 점, 가부장적 혼인관계 등의 이유로 생명·신체 경시 현상을 표출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특히,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생겨난 잘못된 의학상식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데, 사람의 뇌수를 먹으면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살해하도록 하거나, 여성의 신체에 공기를 주입하면 유산된다는 소문으로 자전거 튜브에 바람을 넣는 펌프로 산모를 사망하게 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합의 이혼이 금지되어 있기에 혼인관계를 끊기 위해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도출해볼 수 있는 사항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기강의 해이로 중앙의 절대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나 권위의 누수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원화된 남한 사회에서도 일부 발생하는 현상이 중앙집권적인 북한에서도 여지없이 발견된다는 것이며 이는 남한보다 훨씬 심각한 부정부패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실제 발생한 범죄 사례를 보면, 군대에서의 기강해이 문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정도를 넘어선 실수, 건축 전반에 걸친 부실건축과 함께, 북한 사회에 만연된 전반적인 기강해이 문제로 볼 수 있겠다. 로동적 위대 훈련에 동원된 적위대원이 야간에 창고경비를 서면서 흡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담배꽂초로 인해 창고에 불이 난다든지, 군사동원부의 호출을 받았지만 눈이 나쁘다는 핑계를 내어 신체검사에 불합격을 받은 것, 중요군사기밀 서류를 술 먹다가 잃어버리거나, 탱크 설계도면을 열차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기강해이

문제는 부정부패와 쉽게 결합되어지는데, 북한의 부정부패지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³⁹⁾하는 등 가장 부패한 국가의 오명을 가졌다.

앞서 절도 범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49건의 절도사건 중 가사·경제보통 등 돈벌이 목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식량을 얻기 위해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면 27건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횡령·사기 등 많은 재산 범죄에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질렀다. 이러한 양상은 재산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살인 범죄 등 생명·신체와 관련된 범죄와도 직결되고 있는데, 상점이나 가정집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경비원 등을 살해하거나, 빗 독촉에 시달리자 집주인을 살해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또한, 북한 관리들이 금전을 받고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계획경제 시스템의 붕괴 조짐이 북한의 범죄 양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소의 자동차·기계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기업소의 부품을 절취한다든지,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생산품을 시장에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행위는 국가 공급이 끊기자, 자구책으로 발생하는 범죄이자, 북한 당국이 자체적인 자원 및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을 일방적으로 전가시켜 북한 주민에게 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내부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붕괴 현상이 북한의 범죄 양

39)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도 2011년 전체 183개국 중 소말리아와 공동 182로 최하위를, 2012년에도 176개국 중 174위로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와 함께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홈페이지 참조.

<http://www.transparency.org/cpi2011/results>(검색일: 2013.05.12).

<http://www.transparency.org/cpi2012/results>(검색일: 2013.05.12).

상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협동농장의 재산을 절취하여 자신의 협동농장에서 비품으로 사용하거나, 농기계작업소 화물차 운전수가 차량이 고장 나자 다른 사업소 차고에 침입하여 부품을 절취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생산총화 시 상금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시장에 내다팔아 자금을 충당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 심리의 해소를 위해 미신행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인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미신행위가 존재하지만, 북한에서는 무당의 굿이라든지, 결혼 전 사주와 궁합을 보는 행위는 ‘사회주의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⁴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참고서에서도 미신적 행위로 인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이 사주궁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여 파혼한 경우와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집에 소금을 뿌리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범죄 실상을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같은 간접 자료가 아닌,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최근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고, 2차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기강해이와 부정부패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특히 중앙 분배시스템 붕괴와 기강해이, 잘못된 상식의 유포로 인해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실재한 사건들을 남한 형법상의 범죄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 지평의 확대를

40) 전영선,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6), 196쪽.

위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북한의 범죄 유형에 대한 북한 학자들의 관심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접수: 8월 5일 / 수정: 11월 26일 / 채택: 12월 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김근식, 『형법학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리윤기 외 13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경찰청, 『2011 범죄통계』(서울: 경찰청, 2012).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1권(서울: 국가정보원, 2012).
- 박종선·유동렬, 『북한학』(용인: 경찰대학, 2012).
-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2010).
- 임 응, 『형법총론』(과주: 법문사, 2010).
-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서울: 사단법인북한연구소, 1990).
- 전영선,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6).

2) 논문

-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 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제3권 1호(2009).
- _____,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7권 3호 (2007).
- 서용석, “북한 사회의 범죄,” 『아세아연구』, 제35권 1호(1992).
- 이교덕 외 8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 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근영,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정광진, “북한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최인섭, “북한의 一般犯罪에 관한 豫備的 考察,”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1호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2).

3) 기타 자료

『국민일보』, 2011년 6월 19일자.

통일부 홈페이지. 2013년 5월 15일.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2013년 5월 12일.

<http://www.transparency.org/cpi2011/results>,

<http://www.transparency.org/cpi2012/results>

3. 국외 자료

Naughton, Barry,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7).

[번역본: 이정구·전용복·옴김,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서울: 서울경제경영, 2011)].

Crime & Criminal Patterns in North Korea: A Documentary Review

Youngho Kim(Yonsei University)

Yongho Kim(Yonsei University)

This study scrutinizes North Korea's crimes and patterns by reviewing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 published in 2009. Most homicide cases shows society-wide lack of respect to human lives because most cases started from burglary.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economic crisis and malfunction of central distribution system encouraged embezzlement of public resources and theft of public materials either for private gains or for regular operation of collective companies. In some cases, this led to serious discipline disruption, low morale and corruption among public service officials. Overall, this study encourages further scholarly observation on North Korea's criminal patterns and social trends through the analysis of criminal activities reported by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s.

Keywords: North Korea, crime, corruption, criminal survey, human rights